## 입찰방해·상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7. 22. 2003고단10854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지원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이문호외 4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